

# **이사회 규정**

제 정 : 2006. 04.24

개 정 : 2008. 07.01

2012. 10.12

2021. 03.24

2021. 07.29

2023. 02.07

**한솔인티큐브 주식회사**

# 이사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. 단,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 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(위원회)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
  2.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,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
  3.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
  4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
  5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
  6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

## 제2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6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 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 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, 제415조의2(감사위원회) 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 수

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부의사항)**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(1)로 이를 지정한다.

### **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**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**제12조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의 2(전문가조력)**

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부 칙 (2012.4.15.)

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3.24.)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7.29.)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02.07.)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

|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근거   | 위임여부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사전 승인 | 위임 | 보고 |
| <b>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1) 주주총회의 소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62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68조4 | ○     |    |    |
|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47조2 | ○     |    |    |
| (4) 재무제표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47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5) 정관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33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6) 자본의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38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60조2 | ○     |    |    |
|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74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| 상법374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82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1)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17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00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3) 주식배당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62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40조2 | ○     |    |    |
| (15) 이사의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88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                 | 상법542조9 | ○     |    |    |
|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461조2 | ○     |    |    |
|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 사항   | ○     |    |    |
| <b>2.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1)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사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(2) 연간 경영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사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(3) 연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사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(4) 신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사항    | ○     |    |    |

|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근거       | 위임여부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사전 승인 | 위임 | 보고 |
| <b>2.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(~계속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5) 자금 차입, 공시/신고 관련 사항 (별표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스닥공시 규정6조  | ○     |    |    |
|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3조2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3조2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3조2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9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 |       | ○  |    |
| (10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 | 상법360조9 外   | ○     |    |    |
| (11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526조3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3조1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(13)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 사항       |       | ○  |    |
| (14) 이사회규정,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·개정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| 중요 사항  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15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89조      | ○     |    |    |
| <b>3. 이사 등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8조 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7조2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3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7조1항    | ○     |    |    |
| <b>4. 기타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요사항        |       | ○  |    |
|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40조3     | ○     |    |    |
| (3) 기타 법령,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| 중요 사항       | ○     |    |    |
| <b>5. 보고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|
| (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법393조2     |       |    | ○  |
| (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| 상법391조2 제2항 |       |    | ○  |
| (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부감사법8 조    |       |    | ○  |

|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              | 관련<br>근거 | 위임여부 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사전<br>승인 | 위임 | 보고 |
| <b>5. 보고 사항 (~계속)</b>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|
| (4) 분기별 재무실적               | 중요 사항    |          |    | ○  |
| (5)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       | 중요 사항    |          |    | ○  |
| (6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| 중요 사항    |          |    | ○  |

-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,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진받도록 함.

## 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

-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,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진받도록 함.

| 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여부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전승인 | 위임 | 보고 |
| <b>1. 자금차입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|
| (1) 운영자금(은행, CP 발행, 보험사등)의 조달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   |
| (2) 회사채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3)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<b>2. 공시/신고 관련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|
| (1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, 단일판매(공급) 계약의 체결 및 해지, 제품에 대한 수거·파기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 상황의 해소 |      | ○  |    |
| (2) 증자 또는 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3) 주식의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4)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,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5) 주식분할 또는 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6)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7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(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)의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8)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9) 주권 상장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0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1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2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
| 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여부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전승인 | 위임 | 보고 |
| <b>2. 공시/신고 관련 사항(~계속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|
| (13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4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   |
| (15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6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7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| ○    |    |    |
| (18) 주식배당, 현금·현물배당(분기배당, 중간배당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19)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20) 영업양수도(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, 합병(간이합병, 소규모합병 포함), 분할(물적분할 포함)    | ○    |    |    |
| (21)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·종결·폐지 신청,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22)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<br>(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)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<b>3. 공정거래위원회 공시(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|
| (1)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(별도기준) 5%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, 유가증권, 자산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
| (2)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(별도기준) 5% 또는 50억원 이상의 상품, 용역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   |